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신범서(개명전 : 신수호) 소유물건(2025타경 5272)

의뢰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균

감정서번호 : GD09-250428-3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부산지사

TEL. 051-995-2444

FAX. 0505-182-4448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스타테라스’ 제4층 제407호 외 1개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2025타경5272)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월 02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05월 02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 조건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 조건 검토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에 의거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상 물건의 특성, 표준적인 임대료 수준 및 환원율의 포착이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6. 감정평가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건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가격종류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계획의 수립 ■ 실지조사 계획의 수립 ■ 가격조사계획의 수립
3. 대상 물건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사항 확인 ■ 권리상태의 확인 ■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4. 자료수집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 하였습니다.

나.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로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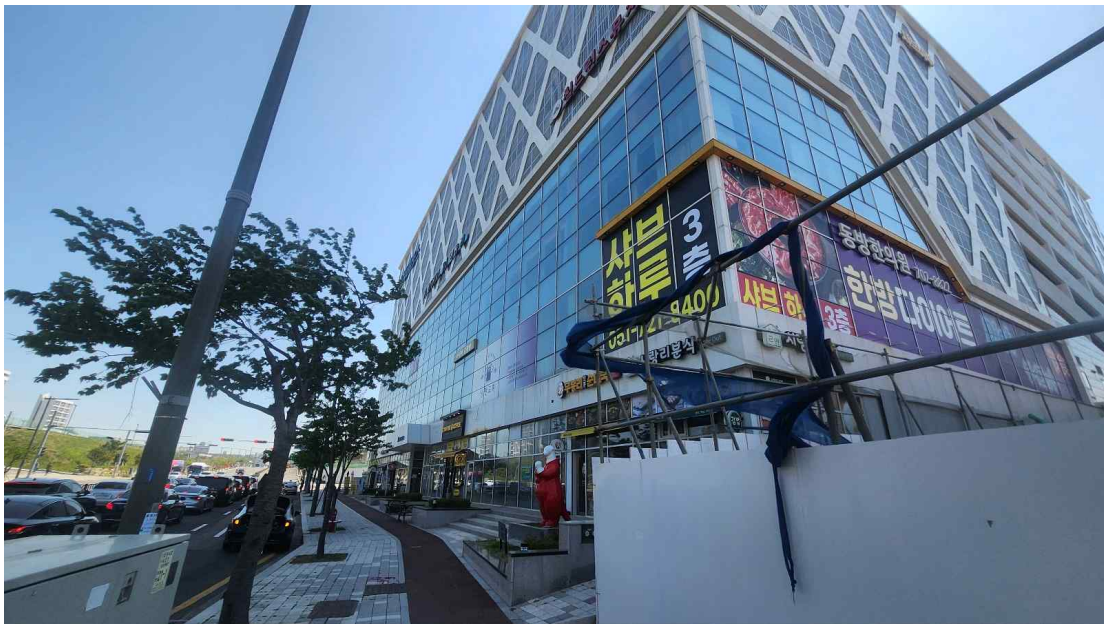
다.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건 일련번호(2)의 경우 인근 호와 벽체간 경계가 없으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이고 본건이 속한 10층 전체 호실 또한 공실상태입니다. 평가대상은 통로 및 별도 출입문은 확보되어 있으나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근 호와 벽체 경계 없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작성 당시 1005호는 경계벽 등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위치와 평가대상 물건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의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경계벽이 철거된 시점과 경위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대상 물건은 일시적으로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이므로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마.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구분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거래가 되므로 토지 및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토지 및 건물가격을 배분한 후,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72]				
건물명칭	스타테라스	사용승인일	2020.10.17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건물연면적	50,443.605㎡		
주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판매시설(상점)		규모	174호	
			층수	지하 : 1층, 지상 : 11층	
물건내역	층·호수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면적(㎡)	비고
1	제4층 제407호	123.015	13.3397	18.6372	-
2	제10층 제1005호	82.25	18.9091	13.8266	-



본건이 속한 건물 전경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거래사례의 선택

가. 거래사례의 내역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성 높은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호	전유 면적(m ²)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m ²)	거래 시점	비 고
1	시랑리 000	스타 000	-/2/210	51.23	431,064,600	8,414,300	2021. 07.09	-
2	시랑리 000	스타 000	-/2/216	49.05	412,721,400	8,414,299	2022. 01.14	-

※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거래사례의 선택

상기 거래사례 중 본건과 위치, 거래시점, 전유면적의 크기,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2)>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타경5272

2. 사정보정

상기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보정은 불필요합니다.

사정보정률	1.000
-------	-------

3. 시점수정

- 1) 지 역 : 부산광역시
- 2) 가격지수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본수익률(집합상가) 지역별/분기별
- 3) 기준시점 : 2025. 05. 02 (거래시점 : 2022. 01. 14)
- 4) 시점수정치

지역·용도	가격변동률	계 산 식
부산광역시 (집합상가)	1.01581	집합상가 지역 : 부산 (22.01.14~25.05.02) 2022년 01분기 : 0.66 2022년 02분기 : 0.73 2022년 03분기 : 0.81 2022년 04분기 : -0.32 2023년 01분기 : -0.2 2023년 02분기 : -0.07 2023년 03분기 : 0.1 2023년 04분기 : 0.11 2024년 01분기 : 0 2024년 02분기 : 0.1 2024년 03분기 : 0.13 2024년 04분기 : -0.16 2025년 01분기 : -0.16 2025년 02분기 : -0.16 (2025년 01분기 자료) $(1+0.0066*77/90)*(1+0.0073)*(1+0.0081)*(1-0.0032)*(1-0.002)$ $* (1-0.0007)*(1+0.001)*(1+0.0011)*(1+0)*(1+0.001)*(1+0.0013)$ $* (1-0.0016)*(1-0.0016)*(1-0.0016*32/90) \approx 1.01581$

4.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개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단지외부요인과 ②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단지내부요인으로 구성되며 ③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서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호별 요인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타경5272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1)

가치형성요인		격 차 율		
요 인	조 건	대 상	사 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상호 대등합니다.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상호 대등합니다.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0.80	1.00	본건(기호1)은 사례 대비 층별 효용 및 전유부분의 면적 등 호별요인에서 열세합니다.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합니다.
누 계		0.8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타경5272

(기호2)

가치형성요인		격 차 율		
요 인	조 건	대 상	사 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상호 대등합니다.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상호 대등합니다.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12	1.00	본건(기호2)은 사례 대비 위치별 효용 등 호별요인에서 우세합니다.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합니다.
누 계		1.120	1.000	

5. 시산가액의 결정

가. 단가의 결정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결정단가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
1	8,414,299	1.000	1.01581	0.800	6,837,863
2	8,414,299	1.000	1.01581	1.120	9,573,009

나. 총액의 결정

일련 번호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시산가액 (원)	결정가액 (원)	비고
1	6,837,863	123.015	841,159,748	841,000,000	-
2	9,573,009	82.25	787,379,954	787,000,000	-

다.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1)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호	전유 면적 (㎡)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가	시랑리 000	스타 000	-/1/117	67.15	810,000,000	12,062,547	2024. 12.06	법원 경매
나	시랑리 000	스타 000	-/2/222	59.0	507,000,000	8,593,220	2024. 12.27	법원 경매
다	시랑리 000	스타 000	-/4/406	123.02	796,000,000	6,470,493	2024. 05.22	법원 경매
라	시랑리 000	스타 000	-/4/408	170.85	1,160,000,000	6,789,582	2023. 12.12	법원 경매
마	시랑리 000	스타 000	-/10 /1014	78.65	773,000,000	9,828,353	2025. 04.07	법원 경매

※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합리성 검토

상기 평가사례와 거래사례는 유사한 가격수준이고 근래 본건이 속한 지역의 거래 수요,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자료, 본건의 관리상태 등의 내부요인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산정단가는 적절한 가액이라고 판단됩니다.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결정가액 (원)	비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407	123.015	18.6372	841,000,000	-
2	717 스타테라스	10/1005	82.25	13.8266	787,000,000	
합 계					1,628,00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1,628,000,000원

나.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평가에 있어서 산정된 시산가격을 평가사례, 인근지역에 형성된 가격수준, 실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절한 평가액이라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2				(내)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제10층 제1005호	82.25	82.25	787,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평가
				(1) 소유권대지권	13.8266 6,840.9×-- 6,840.9	13.8266		
합 계							₩1,628,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소재 "국립수산과학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합성구조 평지붕 11층 건물 내 제4층 제407호 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년 12월 17일)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일련번호(2) :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23-12-27)(접합), 주차장(2016-03-16), 중로2류(폭 15m~20m)(2016-03-16)(접합), 관광단지<관광진흥법> 등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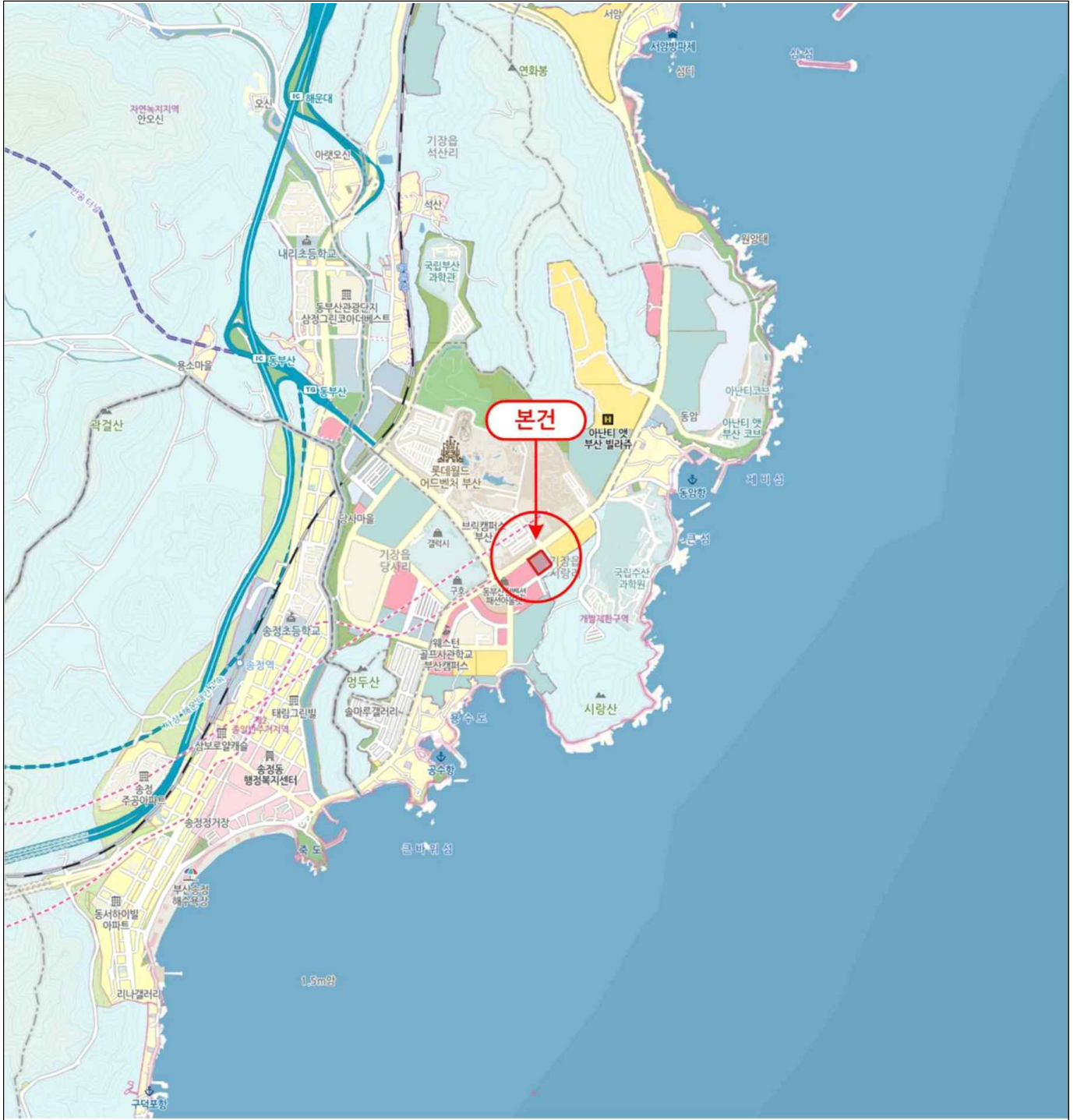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제4층 제407호 외 1개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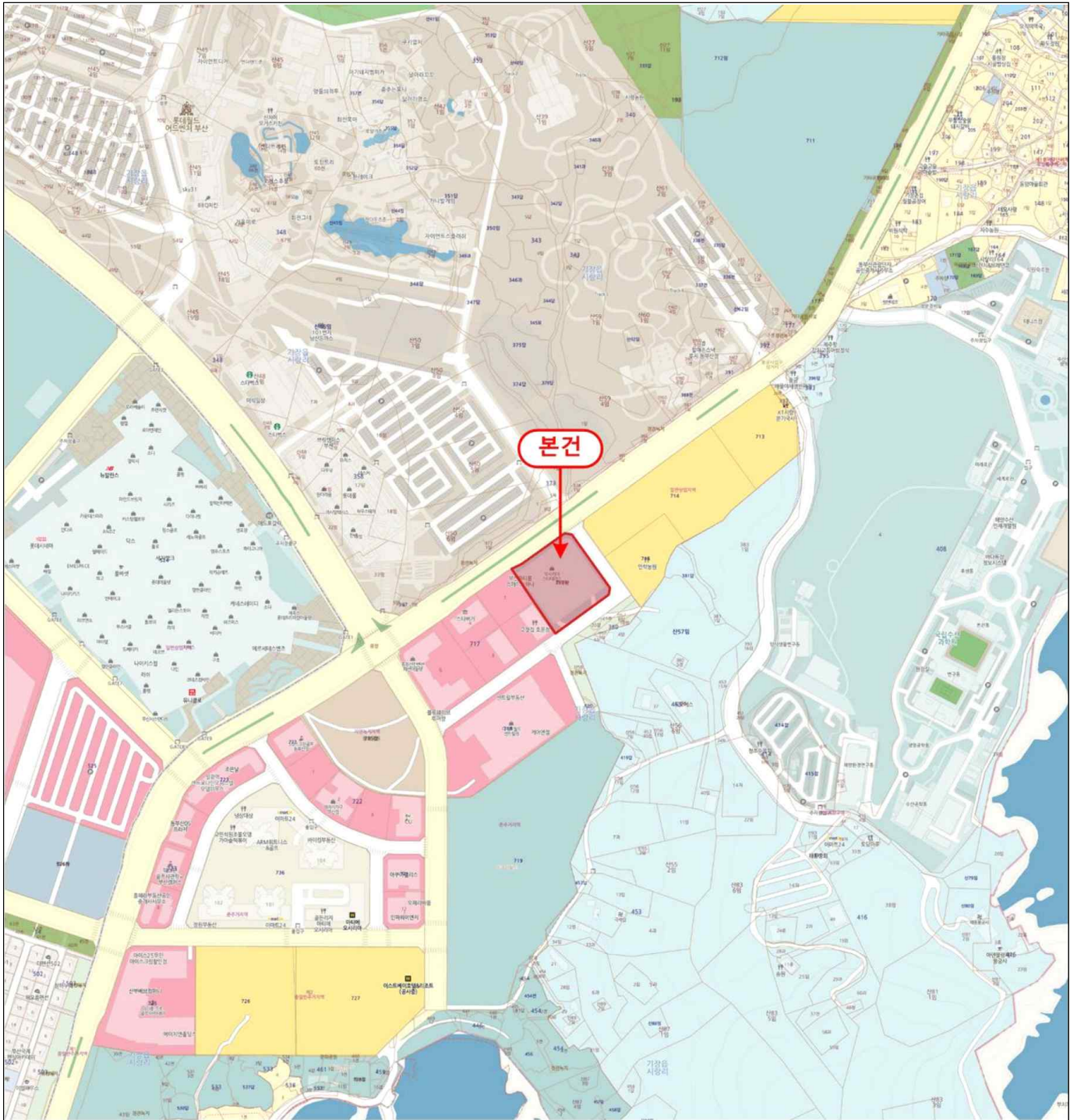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제4층 제407호 외 1개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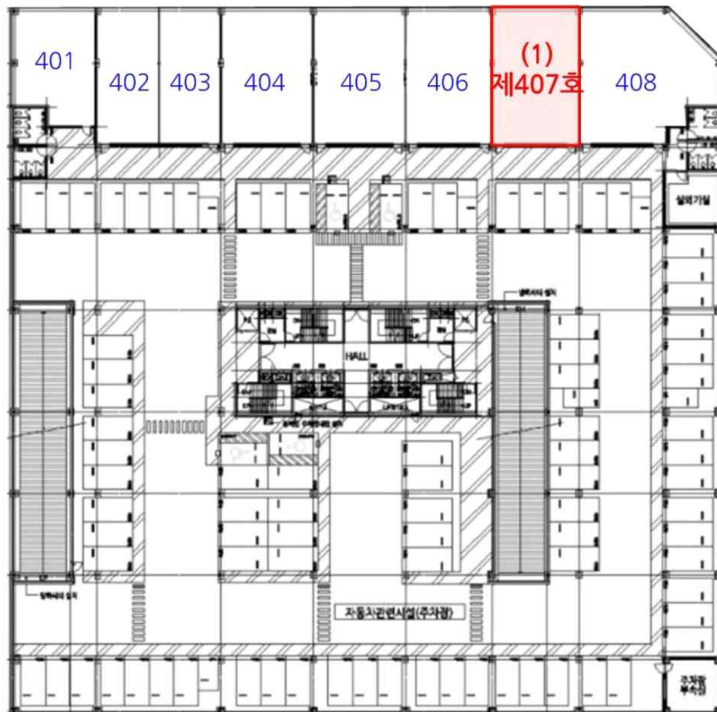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제4층 제407호 외 1개호

No Scale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 (1) 제4층 제407호 】

내 부 구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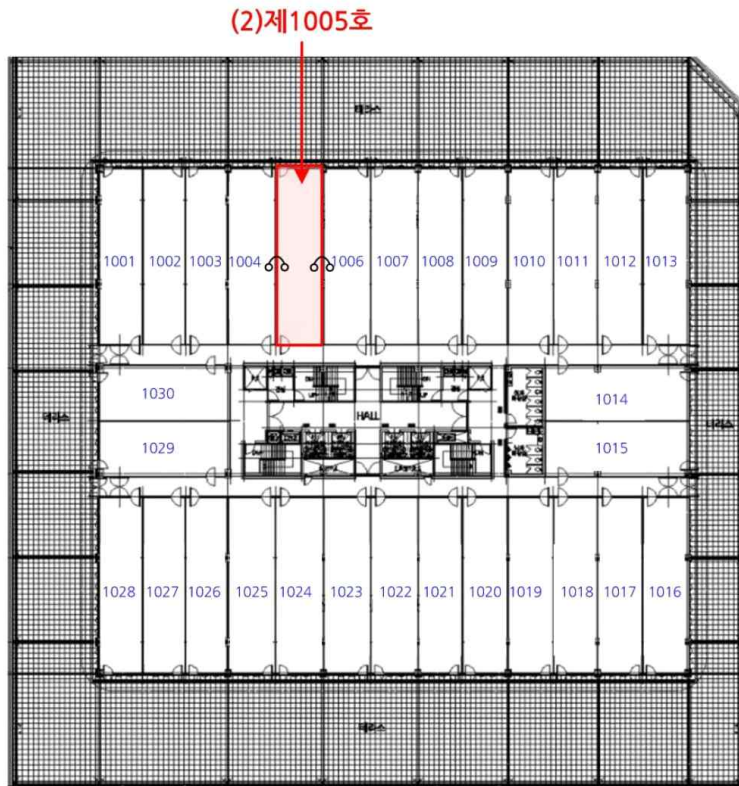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7 스타테라스 4층 407호외


No Scale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 (2) 제10층 제1005호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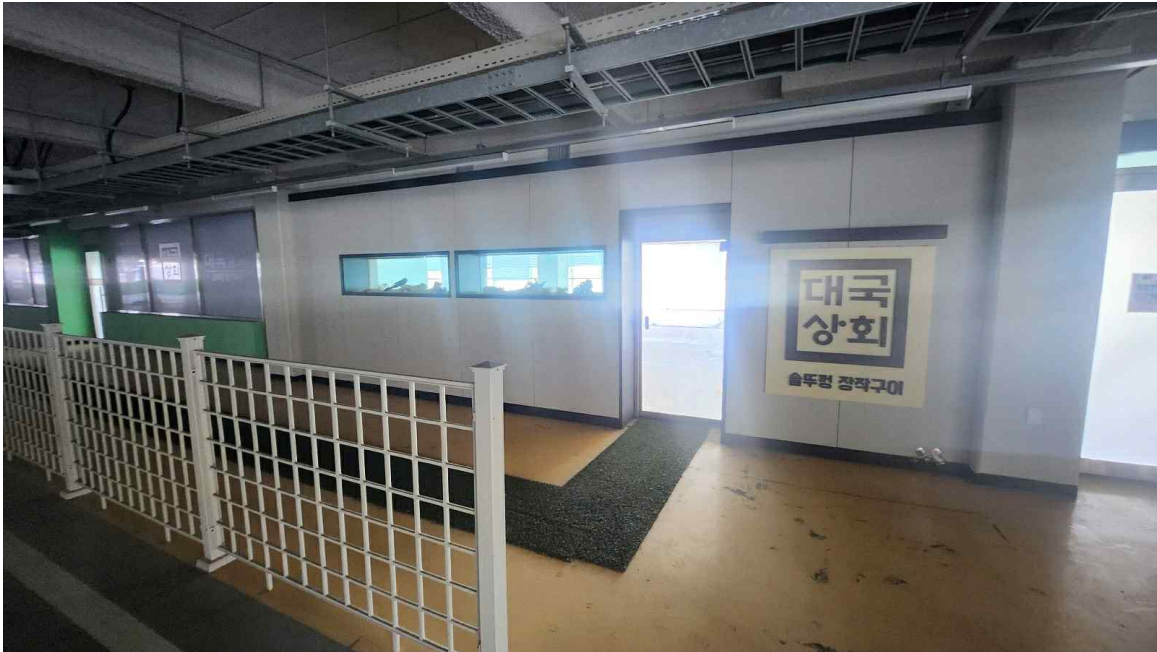


본건이 속한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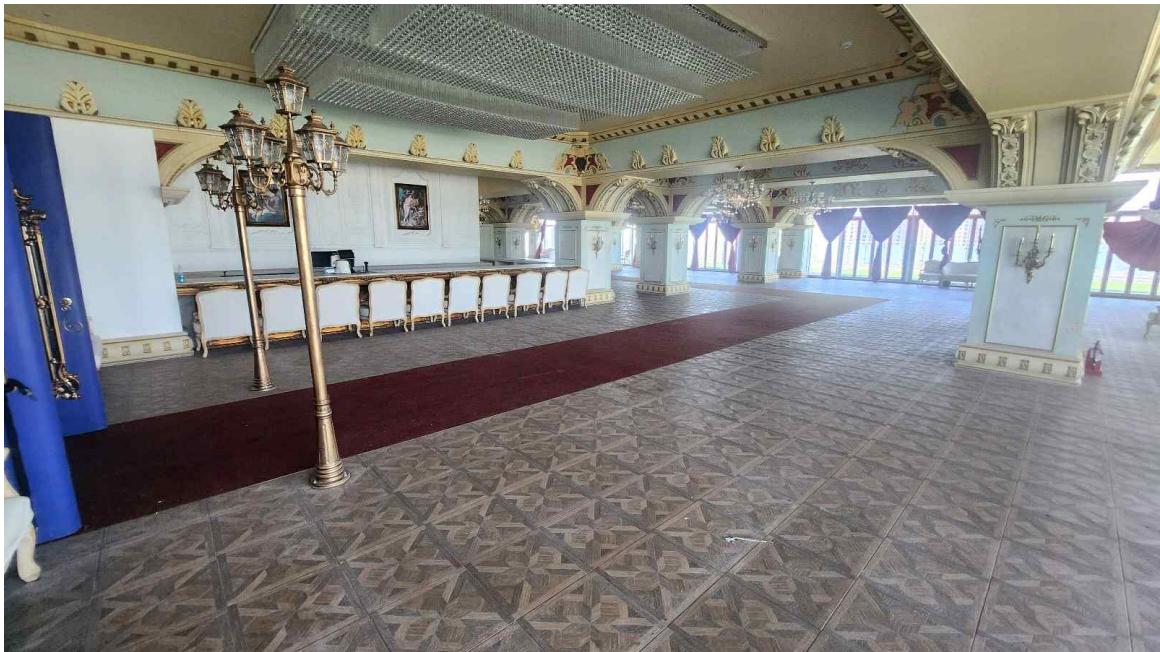


본건이 속한 건물 전경 및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본건 일련번호(1)



본건 일련번호(2) 내부